

2025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사례집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 Service



2025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사례집



농업정책보험금융원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 Service

2025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사례집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 Service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 Service

2025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사례집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 Service



농림수산정책자금 관계자 여러분!

저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2004년 농어업 정책 대출금검사 업무를 시작으로 정부의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발전과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전문기관입니다.

그간 농금원은 정책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3년부터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집행하는 농지 기금과 농안기금에 대해서도 검사가 시작되어 이제 44.5조원 달하는 농림수산업정책자금 융자금 전반에 대한 검사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검사 등 다양한 검사기법을 개발하여 정책자금에 대한 관리 역량을 향상하고 있으며 대출담당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대출 취급기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정책자금의 사후관리 등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부정수급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사례집』은 지적유형별 사례뿐만 아니라, 검사업무 절차 및 자금별·유형별 확인사항, 조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집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농금원은 앞으로도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최우선으로 귀 기울이며 농식품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서 해릉

Contents

I. 검사 개요

- 1. 정의 및 사업목적 6
- 2. 사업수행근거 6
- 3. 검사 업무 절차 7
- 4. 검사 지적 조치 안내 9

II. 검사 시 주요 점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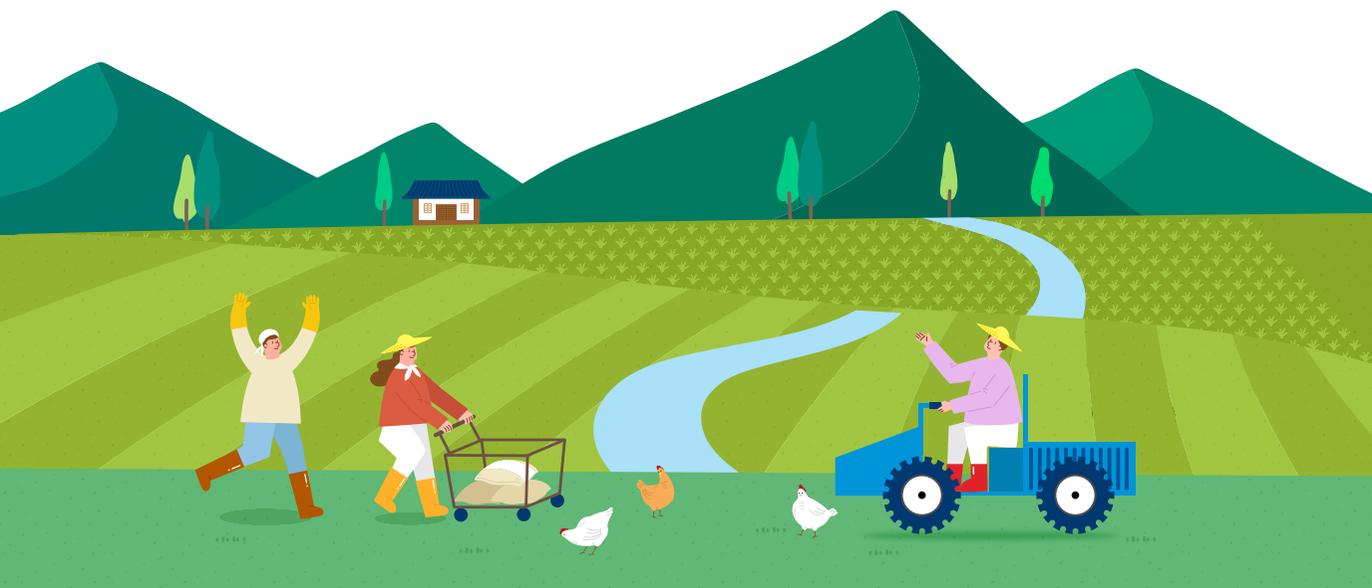
- 1. 농업정책자금 12
- 2. 수산업정책자금 15
- 3. 임업정책자금 17

III. 자금별 주요 지적 사례

- 1. 농업정책자금 23
- 2. 수산업정책자금 47
- 3. 임업정책자금 55
- 4. 대손보전 61



- 1. 정의 및 사업목적
- 2. 사업수행근거
- 3. 검사 업무 절차
- 4. 검사 지적 조치 안내



정의 및 사업목적

[정의]

농림수산정책자금 취급 및 사후관리 등의 관련 업무가 법령, 훈령 및 지침, 검사대상기관의 규정 등에 따라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정책 목적에 맞게 사용되게 하거나 회수하는 등 정상화시키는 것

[사업목적]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한 검사·관리 강화로 농림수산정책금융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농어업인을 위한 정책자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편익 증진과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기여

사업수행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 2 제4항 : 법정업무

(법) 제63조(농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 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위탁업무

(법) 제51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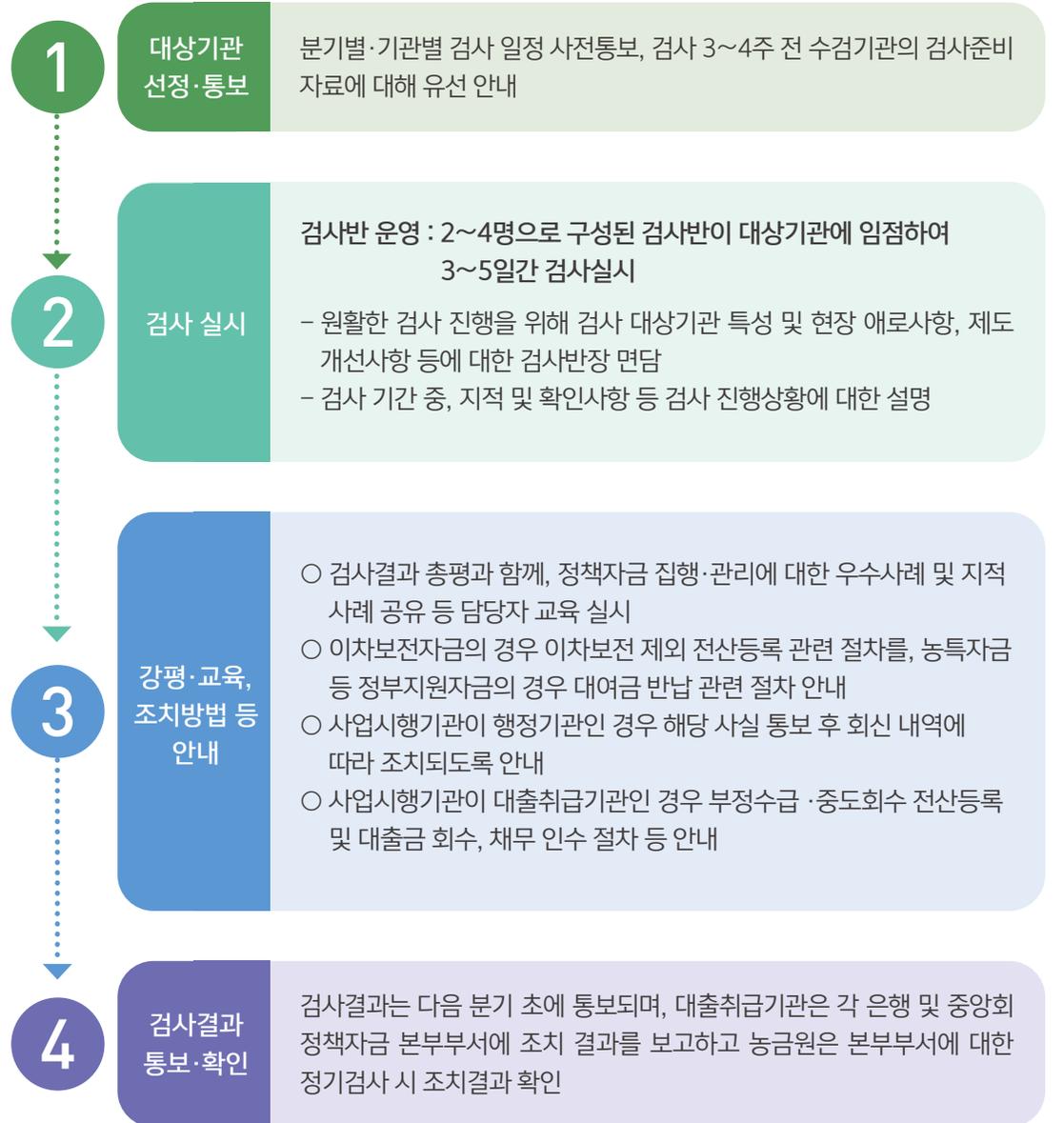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 제32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다.

검사업무 절차

[현장검사 절차]



[비대면검사 절차]



검사지적 조치 안내

[지적 유형에 따른 조치 방법]

구분		조치 방법	
대출기관 귀책 (취급부적정, 사후관리 부적정)	이차보전 제외	지적금액을 검사(종료)일로부터 이차보전제외 전산등록	
	대여금 반납	지적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처분요구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 조치	
사업자 귀책 (부정수급·중도회수)	사후관리 주체 행정기관 사업 시행기관 통보	부정수급(중도회수) 사유 발생 사실을 사업시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시행기관(시·군 등)의 회신내역*에 따라 조치 * 정상화(채무인수), 대출금 회수, 사업자금지원제한 전산등록 (법인대표포함) 등	
	사후관리 주체 대출기관 유예기간 부여	유예기간(처분요구 통지일로부터 60일, 사망은 3개월)을 부여하여 채무인수 등 정상화 하거나,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예기간 다음 영업일로 ① '부정수급사유등의 대출금' 전산등록, ② '부정수급사유등의 자' 전산등록 조치 후 ③ 당해 대출금 회수	
대출기관 귀책	대손 보전	대손보전금 반납	부당하게 수령한 대손보전금을 대손보전금에 반환
		구상채권 회수	사업자의 대손보전 구상채권 미회수액에 대하여 대손보전금에 납부

* '부정수급사유등의 대출금' 전산등록: 자동으로 기한이익 상실, 이차보전제외, 대여금 반납 처리

* '부정수급사유등의 자' 전산등록: 사업자를 일정기간 정책자금 지원제한(법인인 대표자 포함)

[농협] 전산등록 및 통보 방법

구분	항목	전산등록 방법 / 사업시행기관 통보양식	
전산 등록	이차보전 제외	통합업무시스템-여신계정-원장관리 -[1451]대출원장 등록(코드:105, 사유:51) 이차보전제외 등록	
	부정수급사유 등의 대출금	부정수급사유 대출금	통합업무시스템-여신계정-원장관리-[1451]대출원장 등록 -[25]부정수급사유대출금 등록(행정기관 회신내역 반영)
		중도회수사유 대출금	통합업무시스템-여신계정-원장관리-[1451]대출원장 등록 -[94]중도회수사유대출금 등록(행정기관 회신내역 반영)
	부정수급사유등의 자 (사업자금지원제한)	통합업무시스템-여신계정-채권관리-신용정보등록/해제/변경 -정책자금부정수급 등록/해제	
통보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사업시행기관 통보양식」내려받기〉 통합업무시스템-e업무방법서-정책자금-통합자료실-서식 「서식 제1-58호 정책자금대출금부당사용(중도회수)사유발생통보」	



[검사 처분요구 절차]

구분	① 검사 실시	② 처분예정안 통보	③수검기관에서 처분예정안에 대해 이의 제기 시			④ 처분요구서 통지	⑤ 처분사항 이행
			의견 접수	접수된 의견 심의	의견검토 결과통보		
담당 기관	농금원	농금원 ▶ 본부부서 ▶ 수검기관	수검기관 ▶ 본부부서 ▶ 농금원	농금원	농금원 ▶ 수검기관	농금원 ▶ 본부부서 ▶ 수검기관	수검기관
일정 (예)	4월20일 (2/4분기)	7월중 (검사실시 다음 분기의 첫 달)	통보일로부터 10영업일 내외	8월중 (‘처분예정안’ 통보 다음 달)	8월중 (‘처분예정안’ 통보 다음 달)	8월중 (‘처분예정안’ 통보 다음 달)	통지 내용에 따라

*본부부서 : 대출취급기관 본부부서

1. 농업정책자금
2. 수산업정책자금
3. 임업정책자금

농업정책자금



▶ 농축산경영자금 소요경영비 심사 부적정

주요 점검 사항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 내 실제 재배작목 및 경작면적과 다르게 수기 심사 여부 ② 임산물을 포함한 소요경영비 심사 여부 ③ 타 분야 작목을 포함한 소요경영비 심사 여부 * 농업경영자금 & 원예작물자금 : 곡물류 및 과수, 채소, 원예 및 특용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경영자금 : 축산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④ 농업종합자금(운전)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한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여부
주요 제한 사항	① 사업대상자의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심사시스템에서 자동 산출 ② 농가가 주품목을 1~2기작 이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품목으로 산출 ③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상 재배품목과 실제 영농현황이 다른 경우, 영농확인서 (현지 출장 확인, 출장복명서 등 첨부) 등으로 경작품목을 확인 하고 '수기입력'하여 심사 ④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을 재배하는 자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⑤ 농업종합자금(운전)을 지원받고 있는 자(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확인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임대차계약확인서, 농업경영자금 신청서, 출장복명서 등

▶ 농업종합자금 취급부적정

주요 점검 사항	① 운전자금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 내 실제 재배작목 및 경작면적과 다르게 심사 여부 ② 금융기관 총대출금액 및 재무제표 의무 제출 여부(CIF) ③ 시설자금의 경우 총사업비의 80% 이내 대출 여부 ④ 지원 제외 토지 매입 여부
주요 제한 사항	① 1회전 소요운전자금은 해당 작목 또는 축종의 심사기준 소득표상 매출원가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 확인된 경영면적, 양축규모 등을 적용한 후 평균회전수로 나누어 산출 ② 재무제표 제출 대상 경영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금융기관 총대출금 15억원 이상인 개인,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개인 및 법인), 관광농원 기준 사업자(개인 및 법인) ③ 시설자금의 대출금액은 총사업비의 80% 이내(농기계보관창고는 90% 이내) ④ 지원 제외 토지 :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등
확인 서류	· CIF, 재무제표, 사업실적확인서, 검인계약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세금계산서, 계약서, 견적서 등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취급부적정

주요 점검 사항	① 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매매 또는 임차) 여부 ② 정책자금 사용 용도 내 규정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지원 여부 ③ 타 직업 보유 여부
주요 제한 사항	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 *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손간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거래(매매에 한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② 경종분야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담,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③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 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는 경우 * 단,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취업 가능 (1) 농업법인의 근로자인 경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최대 5년 이내, 매년 1회 이상 재직증명서 제출) (2)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의 경우 (3) 재해, 가축질병 발생의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2호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연장 신청 및 확인) (4)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 ④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⑤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실적확인서,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 농촌주택개량자금 취급부적정

주요 점검 사항	① 대출 취급 당시 연면적(건축면적, 주택면적 등) 초과 여부 ② 주 건축물 대비 부속건축물 비율 초과 여부 ③ 사업대상 필지 안 제한 건축물 존재 여부 ④ 당해 주택 거주 여부
주요 제한 사항	①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호 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주요 제한 사항	②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③ 사업대상 필지 안에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건축물이 있어 건축 인허가에 제약이 있거나 건축물에 대한 용자대출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사업 신청 불가 * 단일 건축물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④ (지원자격) 용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 완료해야 함 (사업실적 확인) [증빙자료 목록] 중 '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실적확인서 등

▶ 귀농인 사업취소 및 용자금 회수사유 발생

주요 점검 사항	① 타 직업 보유 여부 ②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초과 여부 ③ 농업경영체 미등록 및 영농 포기 여부 ④ 주택 신축 또는 영농기반 시설 매도 혹은 목적 외 사용 여부
주요 제한 사항	①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단,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는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취업 가능 ②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규정에 따름 *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③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 및 주택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④ 귀농 창업 및 주택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주택 등을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 * 시·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 가능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수산업정책자금

▶ 어업경영자금 취급부적정

주요 점검 사항	① 용자기간 연장 시 어업활동(조업실적) 확인 여부 ② 전년도 기타 직업소득 37백만원 초과 여부 ③ 비대상자 지원 여부
주요 제한 사항	① 어선어업 : 용자기간 중 6개월 이상에 걸쳐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낚시어선업 입출항 실적 제외) ② 어선어업 외 : 수산물 판매금액의 합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전년도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 단, 총 소득 중 어업소득이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는 제외 ④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의 상근 임직원, 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64조)』, 『지방공무원법(제56조)』), 교원(『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해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근 임직원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선박 출(입)항 신고 내역 등

▶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취급부적정

주요 점검 사항	① (종자 및 친어 구입 등) 적정 대출 비율 초과 여부 ② (부지 구입) 적정 대출 비율 초과 여부
주요 제한 사항	① (2020년~2021년) 종자(패) 및 친어(모패, 모하 등) 구입비 등 운영자금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대출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② (2021년) 양식장·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대출금액의 50% 이내만 허용함 ※ 사업자 선정연도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지침 확인 필요
확인 서류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실적확인서 등

▶ 귀어업인창업지원자금 취급부적정

주요 점검 사항	① 기존 유사 자금지원 여부 ② (신축부지 구입비) 적정 대출 비율 초과 여부
주요 제한 사항	①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 등을 지원받은 자 ② (2020년~2021년) 양식장·가공공장 등 신축부지 구입비의 경우 대출 집행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 양식장·가공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부지 구입 불가 ※ 사업자 선정연도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지침 확인 필요
확인 서류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실적확인서 등

▶ 수산업경영인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사유 발생

주요 점검 사항	① 타 직업 보유 여부 ②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보유 여부 ③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주요 제한 사항	① 어업 외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월정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다만 ㉠ 실제 어업에 종사하나 여한기에 시·군 내 일시 취업자(3개월 이내), ㉡ 한시적으로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 ㉢ 자금상환자로서 어업기반을 상실하였으나 현재 어촌 계원(수협 조합원)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② 구입·신축 또는 증·개축한 양식장·어선·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 ③ 어업인후계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년도 포함 2년 이내(선정일 기준)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확인 서류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실적확인서 등

임업정책자금



▶ 전문임업인육성자금 취급(사후정산) 부적정

주요 점검 사항	① 연간 노무비 지급 적정 여부 ②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동일인)로부터 임산물 구입 적정 여부
주요 제한 사항	① 사업비의 검증과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외의 자에게 노무비(직접노무비에 한한다)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 연간 노무비 규모는 1억3천만원 미만으로 함 * 연간 노무비(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외) - (~2008년) 연간 사업비 3천만원 미만에 대하여 연간 노무비 지급 가능 - (2009년~2013년) 연간 사업비 5천만원 미만에 대하여 연간 노무비 지급 가능 - (2014년~2023년 11월 14일) 연간 노무비 5천만원 미만까지 지급 가능 - (2023년 11월 15일~현재) 연간 노무비 1억3천만원 미만까지 지급 가능 ② 사업비의 검증과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부터 임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금액한도는 3천만원 이하로 한다. 단, 1천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에는 임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확인 서류	· 인부사역부, 금융기관 거래자료, 자필 서명 영수증 등

▶ 임업인경영자금 융자한도 초과

주요 점검 사항	① 소요자금 심사 적정 여부 ② 적정 토지 임차료 지원 여부 ③ 타 직업 보유 여부
주요 제한 사항	① 임업 규모당 소요경영비를 참고하되, 실제 임업 경영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임업규모 확인서류는 소요경영비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징구 ② (사용용도) 지원대상 임업인의 사업 운영·유지 및 경영복구에 필요한 자금, 토지 임차료 (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대환대출하는 경우 ③ 산림조합·농협·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교수 및 공공기관 근무자 *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계약직 근무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교사, 교수, 시간강사 등 국·공·사립학교 재직자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직 중에는 대출신청 불가하며, 퇴직 후 대출신청 가능 * 만 65세 이하인 사업대상자가 대출신청 시 직업 보유 사실 확인은 산림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④ 임업경영 중단자, 위탁경영 등 실제 임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변경)확인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설계서, 사업추진실적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 귀산촌인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사유 발생

주요 점검 사항	① 타 직업 보유 여부 ② 타 사업체 경영 여부 ③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초과 여부 ④ 자가시공 인건비 지원 여부
주요 제한 사항	①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농업 인정범위 : ㉠ 임업(농업 포함), ㉡ 농업 겸업, ㉢ 수산업 겸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다만, 산촌지역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며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는 지역산림조합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 가능 ②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농업 인정범위 : ㉠ 임업(농업 포함), ㉡ 농업 겸업, ㉢ 수산업 겸업 * 본인 명의 또는 본인을 포함한 공동명의로 총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가 동 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임업인이 임야에서 임산물 및 목재를 생산하거나 그 임산물 및 목재를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③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농업 인정범위 : ㉠ 임업(농업 포함), ㉡ 농업 겸업, ㉢ 수산업 겸업 * 사업신청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에는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 타 산업 분야 종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등 제출 * 주택구입 및 목조주택 자금은 연소득을 제한하지 않음 ④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지원하지 않음 *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 예외 사항은 지원 -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 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인부사역부 등



1. 농업정책자금
2. 수산업정책자금
3. 임업정책자금

 **농업정책자금**

분류	검사 지적사항	
농축산경영	재배작목 임의변경 및 경작면적 과대계상 ①	24
농업종합	재배작목 임의변경 및 경작면적 과대계상 ②	25
농업종합	가축사육규모 과대계상	26
농축산경영	지원 비대상 품목(임산물) 지원	27
농업종합	총사업비 80% 초과 취급	28
농업종합	재무제표가 없는 농업경영체에게 대출	29
농업종합	연간 매출액 규모를 초과하여 대출	29
후계농업경영인	기타자금 용자가능한도 초과 ①	30
귀농인	기타자금 용자가능한도 초과 ②	31
농촌주택	비지원대상 주택 대출	32
농촌주택	사업실적확인서 미발급 또는 사업실적확인서 상 사업실적금액 공란	33
농촌주택	사업실적확인서의 사업실적금액 초과하여 대출	34
공통	농지, 시설,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	35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타 직업 보유, 타 사업체 경영	36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취득 자산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 ①	37
농촌주택	취득 자산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 ②	38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서 임산물 재배	38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당초 사업계획 미이행	39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환수	40
보조금+용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시설 멸실	41
농촌주택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주택 증축	42
공통	영농·사업포기	43
공통	사망	44
공통	사업시행기관 통보 미이행	45

 **수산업정책자금**

분류	검사 지적사항	
어업경영	조업실적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용자연장	48
수산업경영인, 귀어업인	타 직업 보유, 타 사업체 경영	49
수산업경영인, 귀어업인	어선, 시설,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	50
공통	사업포기	51
공통	사망	52
수산업경영인, 어업경영	어업정지 처분자에 대한 용자금 회수조치 미이행	53

 **임업정책자금**

분류	검사 지적사항	
공통	임산물 구입 가능 한도 초과	56
공통	직접노무비 지급 가능 한도 초과	56
공통	임야, 시설,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	57
귀산촌인	타 직업 보유, 타 사업체 경영	58
공통	임업·사업포기	59
공통	사망	59

 **대손보전**

검사 지적사항	
부적정하게 취급된 정책자금에 대하여 대손보전 부당수령	62
대손보전금에 대한 구상채권 미회수	63

III

자금별 주요 지적 사례

농업정책자금

- 취급부적정
- 부정수급
- 중도회수
- 사후관리 부적정



01 농축산경영자금 재배작목 임의변경 및 경작면적 과대계상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소요경영비 심사 시 재배작목 및 경작면적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 원부 등 영농확인서류와 다르게 심사함에 따라 적정 용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함

🔍 관련규정 농업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농축산경영자금)

■ 대출금액 및 소요경영비 산출 방법

소요경영비는 각 자금에 소요되는 1기작 운전자금*으로 사업대상자 및 영농확인서류에 기재된 영농규모(면적, 사육 두수 등)를 기준으로 시스템에서 자동 산출

* 1기작 운전자금 : 동일 농경지(과수, 축종 등)에 대하여 투입에서 출하까지 1기작 기간에 필요한 경영비를 말하며, 1기작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경영비로 환산한 금액

- ➔ **확인사항**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임대차계약확인서 등
- ➔ **조치사항** 초과 취급액에 대하여 이차보전대상에서 제외함

02 농업종합자금 재배작목 임의변경 및 경작면적 과대계상

농업종합자금 지원을 위한 소요경영비 심사 시 재배작목 및 경작면적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영농확인서류와 다르게 심사함에 따라 적정 용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함

🔍 관련규정 농업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농업종합자금)

■ 개인농업생산경영체

사업현황은 사업계획서의 사업(영농)현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를 징구하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입력

- 생산규모는 기존 규모와 금차 증가분으로 구분하여 입력하고 임차면적을 포함. 임차면적을 포함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중 하나의 자료를 징구하여 임차사실을 확인
- 규모증가 없이 기존 작목(축종)을 새로운 작목으로 대체 시 기존 규모는 없는 것으로 하고 금차 증가분만 인정
- 노지 및 시설하우스 작목은 주생산품목을 1~3기작으로 나누어 각각 입력하되 사업계획서의 기작별 재배기간을 확인

■ 운전자금

개인경영체 등 심사기준소득에 의해 대출심사하는 경우, 해당 작목 또는 축종의 심사기준소득표상 매출원가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 확인된 경영면적, 양축규모 등을 적용한 후 평균회전수로 나누어 산출

- ➔ **확인사항**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임대차계약확인서 등
- ➔ **조치사항** 초과 취급액에 대하여 이차보전대상에서 제외함



03 농업종합자금 가축사육규모 과대계상

농업종합자금 지원을 위한 소요경영비 심사 시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자료를 통해 가축(한우) 사육 규모를 확인함에 있어 생후 6개월 미만 사육두수를 제외하고 심사하여야 함에도, 포함하여 심사함에 따라 적정 용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함

관련규정 농업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농업종합자금)

■ 개인농업생산경영체

사업현황은 사업계획서의 사업(영농)현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를 징구

■ 축산 입력방법

품목(축종)	입력요령
공통	· 가축사육 검증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적용두수 또는 현장확인 두수를 입력 (소의 경우 이력제자료에 의한 사육두수도 인정)
한육우(번식, 비육)	· 한우는 생후 6개월 이상된 것에 한하여 암소는 한우번식으로 숫소는 한우비육으로 입력 · 젖소숫소(육우)는 전량 젖소비육으로 입력
양돈(일관, 번식, 비육)	· 양돈일관·번식은 모돈(임신돈, 분만돈, 종부대기돈) 두수만 입력(후보돈은 제외) · 양돈비육은 자돈, 육성돈, 비육돈 전량 입력
낙농	· 낙농은 암소 중 초임우, 건유우, 착유우 두수만 입력
산란계, 종오리(산란용)	· 산란계 및 종오리(산란용)는 성계·성오리(18주령이상) 마릿수만 입력
산란육성계, 육계, 육용오리	· 산란육성계, 육계, 육용오리, 토종닭은 전량 입력
기타 축종	· 현장확인 두수(말일관은 암말 두수만 입력)

■ 운전자금

개인경영체 등 심사기준소득에 의해 대출심사하는 경우, 해당 작목 또는 축종의 심사기준소득표상 매출원가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 확인된 경영면적, 양축규모 등을 적용한 후 평균회전수로 나누어 산출

- ➔ **확인사항** 가축사육현황 신고·확인서,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등
- ➔ **조치사항** 초과 취급액에 대하여 이차보전대상에서 제외함

04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비대상 품목(임산물) 지원

임산물로 분류되는 지원 제한품목만을 재배함에도 불구하고 대출 취급함

관련규정 농업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농축산경영자금)

■ 대출 제외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단,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 시 가능)

■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령경귀(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삼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율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 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 **확인사항**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출장복명서 등
- ➔ **조치사항**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이차보전대상에서 제외함

05 농업종합자금 총사업비 80% 초과 취급

축사 신축을 위한 농업종합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나 카드·현금영수증 등을 통하여 사업비 전액의 추진진도를 확인하고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대출 취급하여야 함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실적 전액을 대출 취급함에 따라 용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함

관련규정 농업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대출금액 : 총사업비의 80% 이내(농기계보관창고는 90% 이내)
- 사업실적확인
 - 사업비 전액의 추진 진도를 확인
 - 사업실적확인 시 증빙자료
 - 시설공여자 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나 카드·현금영수증(일반과세자), 계산서(면세사업자) 또는 자필·카드·현금영수증(간이과세자)
 - 현지 방문 시 찍은 사진
 - ※ 자가시공(총사업비가 1억원 이하인 사업)일 때, 대출대상자가 총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노무비(직접노무비에 한함)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외의 자(사업비의 1/10의 한도 내에서 대출대상자 및 그 가족은 1인에 한함)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것과 동일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확인사항**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등
- ➔ **조치사항** 초과 취급액에 대하여 이차보전대상에서 제외함

06 농업종합자금 재무제표가 없는 농업경영체에게 대출

금융기관 총대출금이 15억원 이상이며, 1억원 이상의 농업종합자금을 기 지원받았으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농업종합자금을 지원함

관련규정 농업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농업종합자금)

- 대출 제외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영체 (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의 농기계구입자금, 동일인당 종합자금대출금 1억원 미만 대출 시는 제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 금융기관 총대출금 15억원 이상의 개인
 -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개인 및 법인)
 - 관광농원 기존 사업자(개인 및 법인)

- ➔ **확인사항** 고객정보조회표(CIF), 재무제표 등
- ➔ **조치사항**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이차보전대상에서 제외함

07 농업종합자금 연간 매출액 규모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

농업종합자금 농산물가공사업 대출 취급 시 사업자의 연간 농산물 가공사업 매출액 규모를 확인하지 않아, 적정 용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함

관련규정 농업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농업종합자금)

- 농산물가공사업 대출금액
 - 운전자금 :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을 준용(다만, 소요자금 산출 생략 대상 중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취급하는 여신” 조항은 적용 불가)
 - 대출한도 : 대출대상자의 연간 농산물가공사업 매출액(사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추정 매출액) 범위 이내
 - ※ 기대대출금을 대환·재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 상환
 - ※ 운전자금 대출잔액(30억원 이상, 수출및규모화사업자금 포함) 보유자는 운전자금 추가 지원 불가

- ➔ **확인사항**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원료 매입 관련 증빙 등
- ➔ **조치사항** 초과 취급액에 대하여 이차보전대상에서 제외함

08 후계농업경영인 기타자금 용자가능한도 초과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함에도, 사업실적확인서를 근거로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함

관련규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지원 분야	세부 지원대상
경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비료, 모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 농기계 구입비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택승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하며, 기타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부지원대상만 지원
기타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농분야 젖소 구입은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 · 농기계 구입비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택승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하며, 기타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부지원대상만 지원

- ➔ **확인사항** 사업시행지침, 사업실적확인서 등
- ➔ **조치사항** 초과 취급액에 대하여 이차보전대상에서 제외함

09 귀농인 기타자금 용자가능한도 초과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함에도, 사업실적확인서를 근거로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함

관련규정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모목(다년생)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농기계 구입,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 **확인사항** 사업시행지침, 사업실적확인서 등
- ➔ **조치사항** 초과 취급액에 대하여 이차보전대상에서 제외함



10 농촌주택 비지원대상 주택 대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 주택이 연면적 150㎡를 초과하여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됨에도, 대출 취급함

📄 관련규정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 이하**
- 사업범위 :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증축의 경우 동일 부지(건축행정으로 신청한 필지) 내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건축물만 추가로 증축할 수 없음
 - 단, 동일 부지 안에 기존 단독주택과 별동으로 근로자 숙소 용도로 사용하려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단독주택은 사업대상 연면적에 합산하지 않음

- ➔ **확인사항** 사업시행지침, 사업실적확인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 **조치사항**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이차보전대상에서 제외함

11 농촌주택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사업실적금액이 공란인 경우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문서상 사업실적금액이 공란으로 되어있어 적정 융자한도를 산출할 수 없음에도 대출 취급함

📄 관련규정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 **사업실적확인**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증빙서류 검토 등을 거쳐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하고 증빙자료의 사본을 보관
- 융자 대출 신청 시 농·축협에 제출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과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농·축협은 증빙자료 사본 제출을 사업대상자와 시·군·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와 시·군·구는 이에 따라야 함

사업실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

- ① 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② 주택건축과 관련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카드·현금 영수증의 경우는 배우자 명의로도 발급 가능 (중략)
 - 상기 ②에 따른 증빙자료 이외 송금내역 등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 ③ 건축주(사업대상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는 동일
 - 건축 공정별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등
 - 건축에 소요된 비용(기존주택 또는 빈집의 철거 비용, 관련 세금 등 해당 주택 건축기간에 건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
 - 건축자재 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노무비* 지급 증빙자료
-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노무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노무비는 사업실적(실제 건축비)으로 불인정

- ➔ **확인사항** 사업대상자 선정 공문, 사업실적확인서 등
- ➔ **조치사항**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이차보전대상에서 제외함

12 농촌주택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사업실적금액을 초과하여 대출 취급

사업시행기관의 사업실적확인서상 '사업실적'금액 이내에서 대출 취급하여야 함에도, 사업자의 대출신청 금액 전액을 대출 취급함

관련규정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축 포함)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 대출금액은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과 대출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한도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결정

- ➔ **확인사항** 사업대상자 선정 공문, 사업실적확인서 등
- ➔ **조치사항** 초과 취급액에 대하여 이차보전대상에서 제외함



01 공통 농지, 시설,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농지·시설·시설물을 타인에게 매도(증여)함

관련규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취소사유**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대출받아 용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영농을 계속할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된다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용자금을 상환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용자실행 시 조건에 따라 정상 상환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회수사유**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용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등

➔ 조치사항

사후관리 주체	조치사항
대출취급기관	① 유예기간을 부여하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예기간(~60일) 이내에 정상화되도록 조치 ②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다음 영업일로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 및 대출금 회수,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사업시행기관 (시·군·구)	사업시행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그 회신내역에 따라 조치 * 회신내역 예시 : ① 정상화(소유권 원상복귀 등) ② 대출금 회수,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02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타 직업 보유, 타 사업체 경영

후계농업경영인이 회사에 상근 직원으로 취업하여 매월 보수를 받고 있음

관련규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취소사유

- 도시 이주·이탈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규정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 제재·처벌대상자 및 처벌기준

-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확인사항** 사업시행지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 **조치사항** 사업시행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그 회신내역에 따라 조치

- * 회신내역 예시 : ① 정상화(사직, 일시적 근무 허용 등)
② 대출금 회수,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03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목적 외 사용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농지를 분할 및 지목 변경하여 주택을 신축함

관련규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확인사항

대출금 수령 후 거치·상환기간 동안은 본인의 영농기반을 활용하여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시·군·구(대출취급 기관 등 포함)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시설 등) 매각, 사업포기, 지원받은 농지에 주택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 제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취소사유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대출받아 용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임의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관련규정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확인사항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시·군·구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주택 등) 매각, 사업 포기(대출미실행), 지원받은 농지에 주택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제재·처벌대상자 및 처벌기준

- 용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구입·신축 또는 증·개축한 농지·시설·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없이 매각한 경우(임대한 경우 포함) 등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처분한 경우

➔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조치사항** 사업시행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그 회신내역에 따라 조치

- * 회신내역 예시 : ① 정상화 ② 대출금 회수,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04 농촌주택 목적 외 사용(용도변경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주택을 타 용도(숙박업, 음식점업 등)로 사용함

관련규정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 사후관리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하고, 관할 농협에 취소 결과(용자금 회수 대상자)를 통보
 - 연 1회 이상 대출취급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시행지침 위반사유 발생여부를 조사
 - 사업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 거주 단독주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식당, 농어촌민박(숙박시설) 등) 등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조치사항** 사업시행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그 회신내역에 따라 조치

* 회신내역 예시 : ① 정상화(원상회복 등) ② 대출금 회수,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05 후계농업경영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 재배

후계농업경영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농지에서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인 임산물을 재배함

관련규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 신청 제외대상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등 참고
 - * 연령, 교육실적, 농업경영정보등록, 병역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도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에서도 제외

➔ **확인사항**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조치사항** 사업시행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그 회신내역에 따라 조치

* 회신내역 예시 : ① 정상화(재배품목 변경 등) ② 대출금 회수,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06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당초 사업계획 미이행

귀농인이 비닐하우스 신축(3동)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1동만 설치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 일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관련규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취소사유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 단, 본인명의로 영농기반이 있는 자(승계농, 기존 농업인 등)로서 자금대출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유지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회수사유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규정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 제재·처벌대상자 및 처벌기준

- 용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구입·신축 또는 증·개축한 농지·시설·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없이 매각한 경우(임대한 경우 포함) 등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처분한 경우
- 사업취소나 용자금 회수사유 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 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지원의 제한기준을 적용하고, 부당사용 기준 금액은 사업비 전체로 함

➔ **확인사항**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등

➔ **조치사항** 사업시행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그 회신내역에 따라 조치

* 회신내역 예시 : ① 정상화(사업추진 등)
② 대출금 회수,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07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환수

후계농업경영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함

관련규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하되,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

관련규정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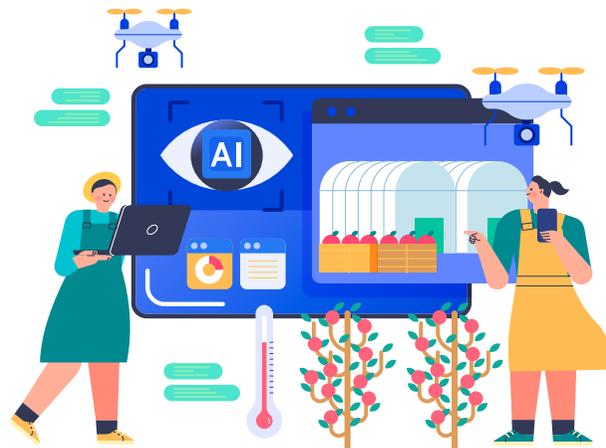
용자 시 유의사항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확인사항**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확인 등

➔ **조치사항** 사업시행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그 회신내역에 따라 조치

* 회신내역 예시 : ① 정상화 ② 대출금 회수,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08 보조금+용자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시설 멸실

관련규정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온실신축) 시행지침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 온실(유리, 경질판, 비닐)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설비시설	준공일	7년	
· 주요 기계·장비	납품일	5년	

제재 및 처벌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명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출장복명서 등

➔ **조치사항** 사업시행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그 회신내역에 따라 조치

* 회신내역 예시 : ① 정상화 ② 대출금 회수,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01 농촌주택 증축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주택을 연면적 150㎡를 초과하여 증축함

관련규정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 사후관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하고, 관할 농협에 취소 결과(융자금 회수 대상자)를 통보

- 연 1회 이상 대출취급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시행지침 위반사유 발생여부를 조사
- 증축(연면적* 150㎡ 초과) 등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 * 연면적은 주택 및 주택에 딸린 부속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며 주택에 부속되지 않은 농사용창고 등은 사후관리 대상 증축 연면적에 미포함('24년 전 선정대상자도 적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조치사항** 사업시행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그 회신내역에 따라 조치

* 회신내역 예시 : ① 정상화 ② 대출금 회수,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02 공통 영농포기, 사업포기

사업자가 영농을 포기하여 농업경영체정보가 등록제외되었음

관련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융자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 **확인사항** 정책자금 농업경영체미등록계좌관리 조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조치사항**

사후관리 주체	조치사항
대출취급기관	① 유예기간을 부여하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예기간(~60일) 이내에 정상화되도록 조치 ②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다음 영업일로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 및 대출금 회수,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사업시행기관 (시·군·구)	사업시행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그 회신내역에 따라 조치 * 회신내역 예시 : ① 정상화(영농복귀, 사업재개 등) ② 대출금 회수,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03 공통 채무자 사망

📖 관련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융자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 **확인사항** 정책자금 사망채무자관리 조회,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조치사항**

사후관리 주체	조치사항
대출취급기관	① 유예기간을 부여하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예기간(~3개월) 이내에 정상화되도록 조치 ②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다음 영업일로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 및 대출금 회수
사업시행기관 (시·군·구)	사업시행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그 회신내역에 따라 조치 * 회신내역 예시 : ① 정상화(채무인수) ② 대출금 회수

01 공통 사업시행기관의 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함

사업시행기관이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함

📖 관련규정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 사후관리

- 시·군·구 등으로부터 융자금 회수대상자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금 회수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농협여신규정 등

➔ **확인사항** 사업시행기관 통보문서 등

➔ **조치사항** 사업시행기관 통보문서에 따라 조치(대출금 회수,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Ⅲ

자금별 주요 지적 사례

수산업정책자금

- 취급부적정
- 부정수급
- 중도회수
- 사후관리 부적정



내일을 위한 기관혁신
보다 나은 [농업금융원]

01 어업경영자금 조업실적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융자 연장

어업활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금 전액을 기한연장(대환) 처리함

📌 관련규정 정책여신업무방법(어업경영자금)

■ 사후관리 : 기간연장 및 재약정

-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및 재약정 시에는 아래와 같이 어업활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조업실적, 수산물 판매실적, 연체여부, 원금상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융자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
 - 어선어업인 경우 : 융자기간 중 6개월 이상에 걸쳐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을 보유
(단, 낚시어선업 입출항 실적은 제외)
 - 어선어업 외인 경우 :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어업활동 여부를 확인
(수산물 판매금액의 합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사람)

- ➔ **확인사항** 입출항 실적, 수산물 판매실적 등
- ➔ **조치사항**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이차보전대상에서 제외함



01 수산업경영인, 귀어업인 타 직업 보유, 타 사업체 경영

수산업경영인이 다른 직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연간 급여 총액이 37백만원을 초과함

📌 관련규정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 선정 취소

- 도시 이주(타 직장 취업 등), 어업기반 상실, 형사상의 소추 등으로 실제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수산업에 종사하며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직장인으로서 연간 급여 총액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본인의 어업종사분야와는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 중 수산업 경영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융자취급기관은 시·도로부터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지원자금 회수 조치
- * 자금회수 및 선정 취소 등 사후관리 규정은 사유 발생 연도 사업지침을 적용

📌 관련규정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 선정 취소

- 어업·양식업 등의 면허·허가·신고 등의 취소 또는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주소지만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위장 전입자)
-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등에 6개월(월 단위)을 초과하여 재직할 경우
- 수협(은행)은 시·도지사(사업시행자)로부터 지원대상자 선정취소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1개월 이내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 제외 조치

- ➔ **확인사항** 어업경영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 **조치사항** 사업시행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그 회신내역에 따라 조치
 - * 회신내역 예시 : ① 정상화(사직 등)
 - ② 대출금 회수,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02 수산업경영인, 귀어업인 어선, 시설,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어선·시설·시설물을 타인에게 매도(증여)함

🔍 관련규정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 자금 회수

-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용자금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도에 통보
 - 구입·신축 또는 증·개축한 양식장·어선·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

🔍 관련규정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 선정 취소

- 구입, 신축 또는 증·개축한 양식장·어선·시설장비·주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 승인없이 타인에게 매각, 폐기 또는 임대 등 처분한 경우
 - * 창업자금으로 대출받아 마련한 어선, 양식장 등 수산기반시설을 수협과 사전협의하여 매각, 폐기하고 다른 수산기반시설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 유지 가능
- 수협(은행)은 시·도지사(사업시행자)로부터 지원대상자 선정취소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1개월 이내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 제외 조치

➔ **확인사항** 어선원부, 등기부등본 등

➔ **조치사항** [수산업경영인] 용자금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도에 통보
[귀어업인] 사업시행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그 회신내역에 따라 조치
* 회신내역 예시 : ① 정상화(소유권 원상복귀 등)
② 대출금 회수,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01 공통 사업포기

수산업경영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통발, 로프 등을 구입하였으나, 어업기반을 상실하는 등 관련 사업을 포기함

🔍 관련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4조

-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경우에는 중도회수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수협은행 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 또는 농금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는 경우

- ➔ **확인사항** 어업경영체확인서, 어선원부 등
- ➔ **조치사항** 사후관리주체에 따라 다르게 조치



02 공통 채무자 사망

관련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4조

-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경우에는 중도회수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수협은행 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 또는 농금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는 경우

관련규정 수산사업자금 용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용자금취급기관은 용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용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용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용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확인사항** 어업경영체확인서, 어선원부 등
- ➔ **조치사항** 사후관리주체에 따라 다르게 조치

01 수산업경영인, 어업경영 어업정지 처분자에 대한 용자금 회수조치 미이행

관련규정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 자금 회수

- 용자금취급기관은 용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용자금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도에 통보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관련규정 정책여신업무방법(어업경영자금)

■ 대출금 중도회수

-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지한 날 또는 처분통보일(혐의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일을 정하여 해당 어업경영자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통보하고, 그 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기일 다음 날부터 회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해당 어업경영자금 대출금을 회수한다.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정지 60일 이상(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의 처분을 받은 경우

➔ 확인사항 어업정지처분사항 등

➔ 조치사항

사후관리 주체	조치사항
대출취급기관	인지한 날 또는 처분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일을 정하여 해당 대출금 회수
사업시행기관(시·도)	대출금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도에 통보

Ⅲ

자금별 주요 지적 사례

임업정책자금

- 취급부적정
- 부정수금
- 중도회수



내일을 위한 기관혁신
보다 나은 [농업금융원]

01 공통 임산물 구입 가능 한도 초과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부터 임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까지 인정됨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전액을 인정하여 정산함

관련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 사업비의 검정 및 정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을 따르며 별도 금액을 정한 경우 이를 준용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동일인)에게 임산물 3천만원 이하까지 인정함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동일인)에게 구매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금융기관 거래자료 또는 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및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조치사항 재원에 따라 다르게 조치

- ① 이차보전자금 : 초과 취급액에 대하여 이차보전대상에서 제외함
- ② 대여금 : 초과 취급액에 대하여 대여금을 반납함

02 공통 직접노무비 지급 가능 한도 초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외의 자에게 노무비(직접노무비에 한함)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 연간 노무비 규모를 초과함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전액을 인정하여 정산함

관련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2조

■ 사업비의 검증과 정산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외의 자에게 노무비(직접노무비에 한함)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 연간 노무비 규모는 1억3천만원 미만

(다만, 법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 1억3천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조치사항 재원에 따라 다르게 조치

- ① 이차보전자금 : 초과 취급액에 대하여 이차보전대상에서 제외함
- ② 대여금 : 초과 취급액에 대하여 대여금을 반납함

01 공통 임야, 시설,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임야·시설·시설물(예.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증여)함

관련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 정산 및 사후관리

- 산림조합은 사업 실시여부 및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 실시
 - 타인에게 상속, 양도,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사업자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용자금에 대한 채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관리
 - * 사업대상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산림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중앙회(보조수반 용자의 경우 지자체)에 통보

➔ 확인사항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등본 등

➔ 조치사항 부정수급 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중앙회(보조수반 용자의 경우 지자체)에 통보 등



02 귀산촌인 타 직업 보유, 타 사업체 경영

귀산촌인이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음

관련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정산 및 사후관리

- 산림조합은 사업자에게 사업취소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실시 및 조치
 - 용자기간(15년) 이전에 사업장(주소지)을 이탈 또는 이탈한 이력이 있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임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 정착자금만을 용자받은 경우에는 임업종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귀산촌인 창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귀산촌인 창업과 무관한 상근근로자로 근무하는 자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사업취소나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기준을 적용하고, 부정수급 기준금액은 사업비 전체로 함

➔ **확인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 **조치사항** 사업취소 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중앙회(보조수반 용자의 경우 지자체)에 통보,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01 공통 임업포기

관련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주요 확인사항

- * 대출금 수령 후 대출기간 내에 선정권자(지역 산림조합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 지원받은 임야에 주택건축, 사업장소의 이전 또는 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정산 및 사후관리

- 산림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중앙회(보조수반 용자의 경우 지자체)에 통보

➔ **조치사항** 중도회수 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중앙회(보조수반 용자의 경우 지자체)에 통보 등

02 공통 채무자 사망

관련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정산 및 사후관리

- 산림조합은 사업 실시여부 및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 실시
 - 타인에게 상속, 양도,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사업자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용자금에 대한 채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관리
 - * 사업대상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산림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중앙회(보조수반 용자의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함

➔ **확인사항** 사망고객여신 조회, 등기부등본 등

➔ **조치사항** 중도회수 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중앙회(보조수반 용자의 경우 지자체)에 통보 등

III

자금별 주요 지적 사례

대손보전

- 부적정하게 취급된 정책자금에 대하여 대손보전 부당수령
- 대손보전금에 대한 구상채권 미회수

₩

내일을 위한 기관혁신
보다 나은 [농업금융원]

01 부적정하게 취급된 정책자금에 대하여 대손보전 부담수령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소요경영비 산출 시 영농증빙 자료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에 따라 융자 한도를 초과하여 정책자금을 대출 취급하였으며, 이후 해당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대손보전을 신청하여 대손보전금을 부당하게 수령함

📄 관련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 대손보전 대상

- 기금의 대손보전대상 대출금은 정책자금 중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및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의하여 대출한 자금 중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및 담보권행사 등 회수절차를 강구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다만, 대출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대출은 제외)으로 한다.

■ 대손보전 신청

- 대손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대손보전신청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 금융기관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권 행사 및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대손보전을 신청할 수 없음(다만,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출취급에 있어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대손보전을 신청할 수 없음

■ 대손보전 이행금액 반환 등

- 금융기관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하여 부당 대손보전 이행이 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대손보전 이행금액 등을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
- 관리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보전 이행을 유보할 수 있음 (다만, 금융기관이 부당 대손보전 이행금액을 자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확인사항** 대손보전 신청서류 등
- ➔ **조치사항** 부적정하게 이행된 대손보전금 반환

02 대손보전금에 대한 구상채권 미회수

- ①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대출기관은 대손보전을 신청하여 대손보전금을 수령하고, 대손보전 대출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탁 받았음
- ② 조합원 탈퇴에 따른 탈퇴지분을 조합의 대출채권 및 대손보전 구상채권과 상계를 통해 채권회수에 우선 충당하여야 함에도, 탈퇴지분을 기금 관리기관에 납부하지 않음
- ③ 사업자에게 입금 또는 자체수의 처리하여 구상권 행사를 이행하지 않음

📄 관련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 구상권

- 관리기관이 대손보전을 할 경우에는 대손보전 대출금에 대한 구상권을 획득
-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는 해당 금융기관이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자산관리회사 또는 심의회에서 의결한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
- 구상권의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구상채권을 회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에 납부

📄 관련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업무방법(구상채권 회수)**

■ 예금 등과의 상계에 의한 회수

- 채무관계자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해당 점포 등에 지급정지의 요청을 한 후 즉시 예금주 앞으로 상계의 통지
- 예금채권 등에 기한 또는 조건이 부착된 때에는 해당 점포장의 승낙이 없는 한 기한의 도래 및 조건의 성취있는 후에 상계처리(다만,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금융기관 등이 기금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기금에 우선하여 상계할 수 있으나, 그 채권이 지급정지 요청 후에 성립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확인사항** 대손보전 신청서류, 채권 상계 처리내역 등
- ➔ **조치사항** 구상채권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대손보전기금에 납부

농업교육포털(AgriEDU)

대출기관 정책자금 담당자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수산업정책자금



임업정책자금

YouTube

정책자금 관련 사업자분들의 주요 주의사항 안내를 위해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유원

2025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사례집

발행일 2024. 12월

인쇄일 2024. 12월

발행처 농업정책보험금유원 Tel. 02.3775.6700

디자인 (주)그린주의 Tel. 1544-0725

※ 본 사례집은 발간년도의 사업시행지침 및
규정 내용을 기준으로 발간되었습니다.